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간의

##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·유아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간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한다.

### 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간의 기관 연계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영·유아의 건강이 기초되는 식습관형성 및 균형 잡힌 영양섭취로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협약내용)

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·교류 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의하여 정한다.

1. 영·유아의 안전한 급식 향상을 위한 급식(영양위생)관련 기술자문 등 정보교류와 상호협력
2. 영·유아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위한 급식실무자의 급식(영양위생)관련 교육 및 자료 공유
3.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위에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기관 연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### 제3조 (비용 부담)

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결정한다.

**제4조 (협약의 이행)**

양 기관은 협약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신의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협력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5조 (협약의 변경 및 해지)**

1. 본 협약은 양자 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상호 협의 하에 해지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.
2.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최소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.
3. 양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6조 (권리·의무 승계)**

본 협정 당사자의 명칭, 대표자, 추진기관 등 단순 사항의 변동 발생 시에는 협정권리의무의 내용은 승계인에게 포괄승계 된다.

**제7조 (효력발생)**

본 협약은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.

**제8조 (보칙)**

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 년 4 월 14 일

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 
주연빌딩 3층

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
센터장: 마 미 정 (인)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 
오송생명 1로 194-41

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 
센터장: 지 영 애